

	재난안전교육센터운영규정	규정번호	4-1-12
		제정일자	2024.10.01.
		개정일자	
		개정차수	
		소관부서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재난안전교육센터(이하 ‘DSEC : Disaster and Safety Education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난안전교육센터(이하, “DSEC센터”)는 재난안전 분야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산·관·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유·협업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공유
- ② 재학생 전공 역량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social safety net)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③ 지역특화(세월호 등) 재난안전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④ 안전 특화 분야의 방향과 부합한 공유·협업 기관 발굴, 애로기술지도, 기술이전·사업화, 시작품 제작지원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⑤ 응급구조학과 및 보건계열 학과의 학생, 교수, 기타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적 권위있는 심폐소생술 자격증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과 홍보와 대학의 위상을 높여 신입생 유치 활동에 기여한다.
- ⑥ 기타 센터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제3조 (조직) ① 센터에는 재난안전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교육과정 지정 기관에 따른 각 교육과정별 디렉터(Director)를 두며, 담당직원 및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과 센터의 전 교육과정의 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5조 (구성) ① 안전교육센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자격을 가진 자와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센터장의 임기와 같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예산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분야 공유·협업 관련 사항
5. 운영 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소집) ① 센터장은 연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센터장이 정한다.

②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센터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